

# 직제 규정

|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
| 제정   | 1993. 3. 10.  | 개정 | 1994. 1. 13.  |
| 개정   | 1999. 4. 13.  | 개정 | 2000. 9. 1.   |
| 전문개정 | 2013. 3. 1.   | 개정 | 2013. 7. 1.   |
| 개정   | 2013. 11. 15. | 개정 | 2014. 3. 1.   |
| 개정   | 2014. 7. 25.  | 개정 | 2014. 10. 20. |
| 개정   | 2015. 3. 31.  | 개정 | 2015. 7. 1.   |
| 개정   | 2015. 8. 31.  | 개정 | 2016. 3. 1.   |
| 개정   | 2016. 6. 23.  | 개정 | 2016. 7. 28.  |
| 개정   | 2016. 12. 23. | 개정 | 2017. 5. 23.  |
| 개정   | 2017. 6. 30.  | 개정 | 2017. 9. 1.   |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중암학원 정관 제73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대학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직제에 관하여 우리대학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**제3조(정원 및 사무분장)** 각 직제의 정원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조(임기)** 이 규정이 정하는 교원의 보직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<개정 2013.7.1.>

## 제 2 장 교원 및 직원

**제5조(총장 등)** ① 우리대학교에 총장을 둔다.

② 총장실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4.3.1., 2015.7.1., 2016.12.23.>

③ 대학교에 업무분장에 따라 2인 이내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,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④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하되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⑤ 사무직원은 일반직, 기술직, 기능직으로 하되 각 직종의 직급별 정원은 법인정관 제77조 <별표2>에 의하며 행정처 및 팀의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⑥ 조교는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며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⑦ 교원 및 사무직원, 조교 외에 필요에 따라 강의전담교수, 겸임교원, 객원교수, 초빙교원, 명예

교수, 석좌교수, 외래강사와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3.>

⑧ 총장은 별도로 총장을 보좌할 수 있는 기구 및 총장보좌역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13.7.1.>

⑨ 총장보좌역은 전·현직 교직원 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여 보할 수 있다. <신설 2013.7.1.>

### 제 3 장 대학본부

**제6조(대학본부)** ① 대학본부에는 교학처, 입학홍보처, 산학협력처, 취·창업지원처, 기획조정실, 총무처, 국제교류처, 대외협력사업본부를 둔다. <개정 2014.3.1., 2014.10.20., 2015.7.1., 2016.7.28.>

② 처장, 실장 및 센터장,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. 단, 총무처장 및 본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1., 2016.7.28.>

③ 교학처에는 교무지원팀, 학생복지팀, 장학팀, Humanitas교육센터, 보건실, 장애학생지원센터, 성교육지원센터를 둔다. <개정 2014.3.1., 2015.7.1., 2015.8.31., 2016.12.23., 2017.6.30.>

④ 입학홍보처에는 입학팀, 홍보팀, 대경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, 대학발전운용센터를 둔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3.1., 2016.6.23., 2016.7.28.>

⑤ 삭제 <2014.3.1.>

⑥ 산학협력처에는 산학협력지원팀, CO-OP현장실습지원센터, 대경드론리서치센터, 대경문화기술센터를 둔다. <개정 2014.3.1., 2015.7.1., 2016.3.1., 2016.7.28., 2016.12.23.>

⑦ 기획조정실에는 전략팀, 기획조정팀, DK인증센터, 영상콘텐츠개발센터를 둔다. <개정 2014.3.1., 2015.7.1., 2016.7.28.>

⑧ <삭제 2014.3.1.>

⑨ 총무처에는 총무팀, 관리팀, 경리팀을 둔다. <개정 2014.3.1., 2015.7.1.>

⑩ 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팀, 글로벌어학센터를 둔다. 그리고 별도로 특임교수단,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. 센터에는 업무팀을 둔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, 2014.7.25., 2014.10.20., 2015.7.1.>

⑪ 취·창업지원처에는 취업지원팀, 창업지원팀, 사회맞춤형주문식교육사업단,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, 창업보육센터, 창업교육센터를 둔다. <신설 2016.7.28.> <개정 2016.12.23., 2017.9.1.>

**제7조(직무대행·협조)** ①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부총장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.

② 총장 및 부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.

③ 부서장은 그 소관 업무가 타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제 4 장 학부·학과

**제8조(학부·학과)** ① 법인정관 및 학칙에 의하여 학부 및 학과를 둔다.

② 학부 및 학과는 학칙 [별표2]와 같다.

1. 삭제 <2014.3.1.>
2. 삭제 <2014.3.1.>
3. 삭제 <2014.3.1.>
4. 삭제 <2014.3.1.>
5. 삭제 <2014.3.1.>
6. 삭제 <2014.3.1.>
7. 삭제 <2014.3.1.>
8. 삭제 <2014.3.1.>
9. 삭제 <2014.3.1.>
10. 삭제 <2014.3.1.>

③ 학부장 및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(단, 학부(과)특성에 따라 총장이 따로이 보할 수 있다.) <개정 2013.7.1.>

④ 본 과정 이외의 학과 및 전공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(단, 학부(과)특성에 따라 총장이 따로이 보할 수 있다.) <개정 2013.7.1.>

⑤ 총장은 필요시 학부(과)를 계열(단과대학)별로 분류하여 학(부)장을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신설 2014.3.1.>

## 제 5 장 부속기관

**제9조(부속기관)** ① 부속기관은 디지털정보센터, 전산정보센터, 방송국, 학보사, 직장민방위소대, 교수학습지원센터, 글로벌빌리지, NCS지원센터,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를 둔다. <개정 2013.7.1., 2013.11.15., 2014.3.1., 2015.3.31., 2015.7.1., 2016.7.28., 2016.12.23.>

② 디지털정보센터에는 수서팀을 두며,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4.3.1.>

③ 전산정보센터에는 정보관리팀을 두며,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4.3.1.>

④ 방송국에는 국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3.7.1.>

⑤ 학보사에는 주간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⑥ 삭제 <2016.7.28.>

⑦ 직장민방위소대에는 대장을 두며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.

⑧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신설 2013.7.1.>

- ⑨ 삭제 <2015.7.1.>
- ⑩ 삭제 <2015.7.1.>
- ⑪ 글로벌빌리지에는 총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신설 2014.3.1.>
- ⑫ 삭제 <2015.7.1.>
- ⑬ 삭제 <2015.7.1.>
- ⑭ NCS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신설 2016.12.23.>
- ⑮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신설 2016.12.23.>

## 제 6 장 부설기관 [제목개정 2014.3.1.]

**제10조(평생교육원)** 평생교육원에는 행정실을 두며,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4.3.1.>

**제11조(보육교사교육원)** 보육교사교육원에는 행정실을 두며,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4.3.1.>

**제12조(기타 부설교육기관)** ① 기타 교육(공공)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약체결에 의하여 특정시설이나 사업을 수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타 부설교육기관의 기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기타 부설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별로 따로 정한다.

**제12조의2(남해게스트하우스)** 남해게스트하우스에는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.

[본조신설 2014.3.1.]

**제12조의3** 삭제 <2014. 10. 20.>

## 제 7 장 부설연구소 및 부설센터

**제13조(부설연구소)** ① 우리대학에 식품과학연구소, 향장연구소, 건강과학연구소, 양조연구소, 국제크루즈산업연구소를 둔다. <개정 2013.7.1., 2013.11.15., 2015.7.1., 2016.12.23.>

② 각각의 부설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## 제 8 장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

**제14조(산학협력단)**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대경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총장이 임면한다.

③ 운영에 따른 하부조직 구성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.

**제15조(학교기업)**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과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경대학교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.

② 학교기업에는 총괄교수 및 대표책임교수를 두며, 총장이 임면한다.

③ 총괄교수는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학교기업의 인사 및 운영을 관장하고, 대표책임교수는 학교기업을 대표하여 소관업무를 통할한다.

④ 운영에 따른 하부조직 구성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9 장 대학평의위원회

**제16조(대학평의위원회)** ①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정관 제31조의2 및 학칙 제78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삭제 <2014.3.1.>

③ 삭제 <2014.3.1.>

④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 10 장 위원회

**제17조(교무위원회)** ① 우리대학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삭제 <2014.3.1.>

③ 삭제 <2014.3.1.>

④ 교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18조(기타 위원회)** ① 우리대학의 주요 업무를 의결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 11 장 기타 조직

**제19조** 삭제 <2016.12.23.>

제20조 삭제 <2013.11.15.>

부칙

① 이 규정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본 규정 실시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199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199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6조(대학본부) ①, ⑦의 기획처 명칭은 '기획조정실'로 개정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